

#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이소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4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1월 27일

발 의 자: 이소라, 김 경,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지향, 남창진, 문성호,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철성, 박환희,  
서준오, 송재혁, 유정인,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상욱, 이영실,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민규, 최재란,  
한 신 의원(31명)

## 1. 제안이유

- 최근 청년의 탈모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 청년의 탈모 치료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방법(안 제5조, 제6조)
- 라.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7조)
- 마. 환수 조치 등(안 제8조)
- 바. 업무의 위탁(안 제9조)
- 사.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모로 인한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통해 청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탈모 치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탈모 치료 지원 신청 절차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탈모 치료 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탈모 치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012000000008

## 미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이소라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2.1.20.

회신일 : 2022.1.30.

내용문의 : 02-2180-7955

###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침부 근거 규정
3. 미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5

e-mail : kjh0123@seoul.go.kr